

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2. 3.

다. 상정일자 : 2004. 2. 3.

(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문화관광과장 구복규

나. 제안사유

- 전라남도지정기념물 제180호(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)와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53호(화순쌍산의 소) 지구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원형 보존 및 충효사상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취득계획대상토지

(단위:천원)

구분	토지소재지			지복	전체 면적 (m ²)	취득 면적 (m ²)	재산가액 (공시지가)	비고
	읍,면	리	지번					
취득	북	서유리	산150-1외 4필지	임야	24,235	13,967	1,545,631 (324,620)	공룡화 석지
취득	이양	증리	산 12외 1필지	임야	84,099	84,099	69,530 (11,590)	쌍산의 소
합계		7필지			108,334	98,066	1,615,161 (336,210)	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서유리 산150-1외 4필지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추후 재논의를 위해 취득계획에서 삭제된 부분이며, 이양 증리 산12외 1필지는 새로이 쌍산의 소 복원 및 보존관리를 위해 구매코자 하는 계획안임.
- 절차상,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 그러나, 서유리 공동화석지 주변 토지에 관해서는 지난 임시회중에 삭제의 이유로 제시되었던 제 문제의 해소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공유재산관리계획안